



【검토보고서】

2017.10.20.(금)
제 285 회 임시회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영헌】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양주시장(미디어정보담당관)

나. 제출일 : 2017. 10. 10.

2. 제안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도로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 및 기존 조례 개정시 미포함 된 내용 반영 (안 제2조, 별지 제3호서식)

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어 해당조항 삭제 (안 제4조)

다. 양주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주요임무인 도로기반시설물의 공동 구축, 정보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 제28조에 따라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정보 통합활용체계와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도로법」

나. 입법예고 : 2017. 8. 25 ~ 9. 22 (27일간)

5. 검토의견

□ 주요 개정 내용

1)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

- 2014.1.14. 개정되었던 「도로법」 상 “도로 등에 대한 준용 규정”을 현행 법조항에 맞도록 정비

(현 행) 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

(개정안)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6.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국토지리정보원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에 의한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6. ----- 이란 ----- ----- 「도로법」 제108조 ----- ----- -----.

※ 관련법규

[도로법]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별지 순서 및 근거규정 변경

- 2009. 12. 21. 삭제 후 비어있던 별지1호 서식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지의 순서를 정비하고
- 2016. 3. 7. 일부개정시 미반영 되었던 별지의 근거규정을 현행에 맞도록 변경하였음

(현 행)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내용상의 변경은 없음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변 경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도시기준점이전신청서	근거규정 변경
별지 제2호서식	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	공간정보제공신청서	※ 제명 현행화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	-	

3) 공간정보 기본계획수립 조항 삭제 (안 제4조)

- 현재 “공간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시행토록 되어있으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도록 규정되어있어 해당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 관련법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호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9.5.22.,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조항 삭제 (안 제11조 ~ 제15조)

- 기존 조례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의 공동구축, 정보공동활용,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정·협약하기 위하여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8조 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관련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 양주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는 주요임무인 도로기반시설물의 공동구축, 정보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 현재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관간 공간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크지 않아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 하였음.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개발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5) 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 (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이라 함은” 은 “~란” 또는 “~이란”으로 하고 안 제8조 및 제21조에서 띄어쓰기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등 맞춤법 및 법령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였음.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 및 기존 조례개정시 미반영되었던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양주시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